

중국 정보통신의 개혁 동향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서 순 복*

前 책임연구원 정 신 량**

중국은 최근 정보산업부로의 조직개편, 우편과 통신의 분리경영, 중국전신(China Telecom)에 대한 주식제도의 도입, 통신법(電信法)의 제정 움직임 등 일련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WTO에서의 중국의 대응을 볼 때 중국 통신시장의 개방은 이제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목 차

- | | |
|---|---|
| <p>I. 정보통신 규제정책의 변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산업부로의 조직개편과 통신정책 결정과정 2. 지방 우전관리국의 활동 및 중국전신과의 관계 3. 외자규제와 WTO 체제하 중국의 대응 4. 우편과 통신의 분리경영 5. 중국전신의 주식제도 도입의 검토 | <p>II. 정보통신관련 입법 동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법(電信法) 2. 통신망과 정보 안전 관련 법률·법규 3. 정보자원 부문의 법률·법규 4. 고도서비스 관련 법률·법규 <p>III. 정보통신산업의 미래와 개혁 전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미래 2. 정보통신산업의 개혁 전망 |
|---|---|

I. 정보통신 규제정책의 변화

1. 정보산업부로의 조직개편과 통신정책 결정과정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정보통신업을 기초산업으로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최근까지 구 우전부의 통일적인 운영과 관리하에 중국의 정보통신업은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국민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연락처: * (062)670-2455, samuel78@hosim.kwangju.ac.kr

** (02)3436-0777, ryang@bellsw.co.kr

그러나 중국의 국가체제 개혁의 강화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전부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체제는 더 이상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정보통신산업 관리체제는 점차 독점에서 경쟁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 제2사업자인 Unicom의 성립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체계가 없는 정보통신산업의 개혁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였고 경쟁환경도 틀이 잡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3월에 제9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1차 회의(1998. 3. 5 ~ 3. 19)는 21세기 중국을 이끌어 나갈 입법·행정·사법 지도부를 구성하고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개편에서 국무원 산하의 장관급 부처 40개중에서 11개를 폐지하고 29개 부처로 통폐합하면서도,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무역위원회와 정보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를 번역하면 정보산업부라 할 수 있음)는 확대 개편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¹⁾

정보산업부는 이전의 우전부(郵電部)²⁾와 전자공업부³⁾를 통합하고 廣播電影電視部, 航天

1) 금번의 국무원기구 개혁은 “작고 강한 정부”와 “21세기 정보시대와 경제위주사회”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되고 있다(「중국 정보산업부의 발족과 향후 전망」,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4. 1, p.53 참조)

2) 우전부는 국무원 산하 부서로서 통신과 우편업무를 담당하며, 주요 통신정책과 입법에 대하여 국무원에 건의하고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정책을 최종 확정하였다. 우전부는 중국 통신시장에서 정부의 통신사업자임과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의 규제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여 규제정책과 사업기능을 병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1994년 우전부의 규제부서와 사업부서를 분리하여 1994년 8월 우정총국(우정사업)과 전신총국(전기통신사업)을 독립하여 사기업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1995년 6월 전신총국은 工商管理局에 우전부와 별개 독립의 사업체로 공식 등록 신청하여 이른바 China Telecom으로 되었다. 그렇다고 전신총국이 우전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고, 우전부가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업운영과 규제업무가 분리되면서 電信政務司가 규제 및 행정업무 전반을 관할하고 통신사업의 관리정책을 정하고 통신운영지침 및 서비스의 품질 감독, 서비스 심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서비스 운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전국적 시장관리와 시장질서 유지, 단말기 入網 허가증 발급, 대형 전용통신 건설사업의 심사, 공중통신망과 전용통신망의 협조사항을 담당하였다.

* 국무원 규정에 의하여 전신정무사가 통신수요와 가용주파수를 고려하여 무선호출, 800MHz 멀티폰, 450 MHz 무선이동통신업무, 국내 VSAT 등에 관하여 허가를 부여한다.

진입 방법	대상 서비스	허가제 (면허제)
무선호출, 800 MHz대 무선통신(MCA), 450 MHz대 무선이동통신, 국내 VSAT, 우전부에서 비준하여 경영하는 기타 정보통신업무 등	신고제 (설립신청제도)	전화 정보서비스, 데이터 통신, 전자사서함, 전자자료교환(EDI), 비디오텍스사업, 우전부에서 비준하여 경영허가증을 실행하는 기타 정보통신업무

자료: 우전부 내부자료, 1998.

工業總公司, 航天工業總公司의 정보 및 네트워킹의 정부 기능까지 통합한 조직이다. 우전부와 전자공업부의 기초 위에서 설립된 정보산업부의 기능과 직책은 다음과 같다.⁴⁾

첫째, 전자정보제품제조산업, 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민경제와 사회업무의 정보화를 추진시킨다.

둘째, 산업의 기획, 정책, 법규를 제정한다.

셋째, 국가통신 기간망(시내망과 시외통신망 포함), 라디오, TV망(무선 및 유선 TV망을 포함), 군수공업 부문과 기타 부문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전용통신망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기획하며 산업관리를 진행한다.

넷째, 자원을 합리하게 분배하고 중복되는 건설을 피하고 정보의 안전을 보증한다. 라디오·영화·TV부, 우주공업총공사, 항공공업총공사의 정보와 망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정보산업부에 편입시킨다.

다섯째, 국가우정국을 성립하며 정보산업부에서 관리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산업부 행정책임자는 吳基傳 이전 우전부 부장이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우전부의 기존 정책 기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정보통신관련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동 부처의 여러 관리부문이 담당업무의 정책과 규칙을 입안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전국적인 통신정책과 법률은 정보산업부에서 입안하여 국무원에 제출하면 국무원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하며, 주요 사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사와 승인을 경유하여 발표 시행한다.

2. 지방 우전관리국의 활동 및 중국전신과의 관계

중국의 정보통신은 1980년대부터 중앙부처인 우전부와 지방의 省·자치구·직할시정부

3) 전자공업부의 변경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2년 5월, 제4기계공업부, 국가라디오, TV공업총국, 국가전자계산기공업총국이 합병되어 전자공업부를 설립하였다. 1988년 4월 국가기계공업부, 전자공업부를 취소하고 기계전자공업부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93년 3월, 기계공업부를 취소하고 전자공업부를 설립하였다.

전자공업부는 국가경제정보 현대화 계획인 '8金計劃'을 주관하면서 JiTong(吉通)을 통하여 정보망을 구축해 왔다. 한편 Unicom(聯通)을 통하여 이동통신 부문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옴으로써 우전부와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업무상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었다. 또 전자공업부는 국무원으로부터 주요한 설비 제조업체로 권한을 받고 있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R&D와 위성통신 부문에서도 우전부와 업무가 상충하고 있었다.

4) 『中國情報新聞』, 1998년 8期, pp.96~97.

· 우전관리국(PTA)⁵⁾이 이원적 관리체제로 운영해 왔다. 우전관리국은 省 소재지의 우전국, 省都 소재지 수준, 地區·市·縣級 우전국이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전관리국은 중앙 부처(정보산업부)와 각 지방 인민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즉 중앙과 지방정부의 2중 통제를 받는 셈이다.

1980년대 개혁개방 물결에 의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각 省 우전관리국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면서 통신망의 건설과 투자, 이익배분, 운영관리 등에서 독립적인 경영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중앙정부가 일원적으로 건설해온 통신망의 확대 보급촉진 차원에서 省내의 시내의 통신망 확충을 각 省 우전관리국 주도로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과의 협작을 통해 통신망 확장을 시도하였는데,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는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자금조달과 경영 기술 노하우 확보를 목적으로 외국 사업자와의 협작 설립이 잇따랐다.⁶⁾

구 우전부는 일종의 직선(直線)기능 구조로서, 우전부에서 직접 China Telecom과 각 성(省)자치구, 직할시 우전관리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도를 하고, 省 우전관리국에서는 省 전신국(電信局)과 시(地市) 우전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도를 하고, 시 우전국에서는 현 우전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도를 한다.

China Telecom은 전국 장거리 통신망 차원에서 각 省 우전관리국에 운영기술과 유지보수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제공하는 각 省 우전관리국과 다만 업무상에서의 지도관계에 있다. 1995년 China Telecom은 그 산하에 이동통신국과 데이터통신국을 신설하였는데 그 두 부서는 업무부문이지 독립적인 관리 부문을 아니다. 이 두 부문을 다만 전국 이동통신업과 데이터통신 업무의 지도를 책임지며 독립적인 인사권과 재무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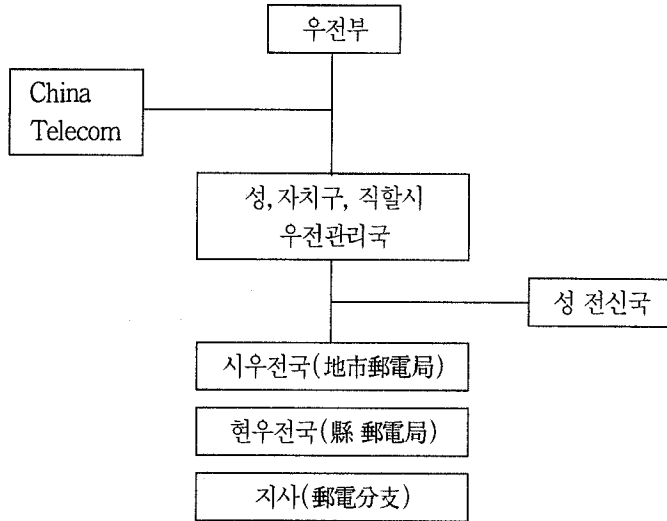
China Telecom이 각 우전관리국에 대하여 합법적인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China Telecom이 전국 공중통신망에 대한 관리와 통제 및 업무경영을 제한 받기 때문에 구역간의 이익 충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국망의 통일적 발전 및 China Telecom의 총체적인 경쟁

5) 우전관리국은 중앙부처인 구 우전부가 우정관련법에 의하여 설치한 지역관리기구로서, 해당 지역의 통신을 주관하며 省 전체의 우전업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공중통신망을 관리하지만, 직접 우전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市·縣級 우전국은 직접 우전업무를 운영하는 동시에 省 우전관리국의 위탁을 받고 소재지 통신업체의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6) 우전관리국이 우전부의 영향권 밖에서 외국기업과 협작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전부에서는 1993년 5월 외자에 의한 통신망 소유 및 운영을 금지하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이후 1994년 6월 27일 “외국기업 투자방향 지도에 관한 잠정규정”과 “외국기업 투자산업 지도목록”이 국가계획위원회·국가경제무역위원회·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의해 공동 발표되면서, 외국기업 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새로운 정책으로서 외자허용 문제에 대하여 외자를 장려하는 분야와 외자를 제한하는 분야를 제시하여 주었다.

우위의 형성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림 1] 우편과 전기통신 분리경영전의 통신 관리체제



3. 외자유제와 WTO 체제하 중국의 대응

중국 국내 정보통신 사업에 대하여 외자 참가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우전부 이외의 중국 기업이 우전부의 인가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외자의 경영 참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기통신 서비스의 운영은 외국 투자가 금지되고 있으나 (외자유법 실시조례 제4조),⁷⁾ 장비분야, 즉 통신설비제조업은 외국투자 장려업종이다(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3조).⁸⁾ 그런데 통신전문가들은 중국시장도 결국에는 개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 중국정부의 투자설비자금의 부족과 신기술의 도입 욕구,

7) 자세한 내용은 서순복·권해수, 『중국의 이동통신 연구개발 현황 및 진출전략』,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96-09, 1997. 3, pp.21~23을 참조 바람.

8) 중국 CDMA 교환기시장에서 進網 허가(입찰자격)를 받아 長城公司와 같은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면 몇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먼저 중국의 네트워크에 물려서 시험(trial)을 해보고, 다음 합작의 경우에 중국측 상대방 회사와 합작 조건이 맞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차세대에 기술개발을 지원해주겠다는 등의 기술개발 조건이 맞아야 한다. CDMA Operator인 장성공사에 CDMA 장비 납품의 선행조건 단계인 장비 시험이 1997년 12월에 끝났는데, 우리 나라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모토로라, 루슨트테크놀로지, 그리고 캐나다의 NT 등 4개 업체가 이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시험사업은 電信總局과 각 省 郵電管理局에서 관장한다.

중국인민들의 통신수요 급증을 들고 있다. 실제 외자유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외자에 의한 중국 통신사업 참여 금지에 국무원 승에 따라 통신 운영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간접 지분 참여 및 경영참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통신관련 사업은 Engineering & Consulting, 제조업 분야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가되고 있다. 기존 외국 업체들의 중국 이동전화 사업(AMPS 및 Unicom의 GSM사업) 참여 방식으로는 용자, BOT, BLT 방식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1997년 2월 15일 WTO는 3년 동안의 협상을 거쳐 기본통신 분야 양허를 확정하여 WTO서비스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첨부하였다.⁹⁾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의 비준을 거쳐 WTO 기본통신협정이 1998년 2월초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WTO 통신협정 및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노력의 강화와 그에 따른 시장자유화의 심화는 중국과 같은 폐쇄된 시장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WTO 가입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대부분의 개도국들까지도 늦어도 2005년까지는 자국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양허한 기본통신협정이 더욱 압력 요인이 되고 있다.

1998년 3월 18일 제네바에서 폐회된 세계통신정책회의에서 중국 우전부 周德強 부부장은 개도국의 통신시장개방은 아직도 점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현재 중국은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 국가 행정관리체제에 대해 조정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법의 등장, 행정과 기업간의 분리, 우편과 통신간의 분리 등 문제가 점차 해결됨과 더불어 중국 통신 정보기반시설의 가속적인 발전에 따라 통신서비스시장은 장래 조건 성숙 시 점차 개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중국 정부는 1998년 7월 24일, WTO 가입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을 인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것은 기본 전기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개방정책을 제시한 것이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해서는 지난 6월 클린턴 미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구체적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가입 교섭을 촉진시킬 생각으로 기본전기통신 분야의 시장개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대표단에 의하면 데이터서비스와 무선호출서비스는 WTO 가입과 동시에 개방을 하고,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WTO 가입 후 5년 이내에 외국기업에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9)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조 바람(통신개발연구원, 『WTO 기본통신협상 종합보고서』, 1997. 6.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전기통신분야의 시장개방안에 대해 다른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더 개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은 11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개도국 지위 여부와 중국의 시장개방 일정에 대한 참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무선호출시장에 대한 개방을 위해 자체시장을 정비하고 있다.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합작회사를 통한 시설투자비를 조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통신망 소유와 운용은 철저히 금해오고 있다.

4. 우편과 통신의 분리경영

1993년 이후 중국 정보통신업 운영관리체제의 개혁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우전부는 海南과 重慶에서 우편과 전기통신을 분리하여 경영을 하는 개혁을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1998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중국의 지역 우전관리국은 우편과 통신 분리경영업무 지도의견과 전국의 통일적인 배치에 근거하여, 충분한 조사와 반복 수정을 거쳐 우전국 분리경영 업무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정보산업부에 보고, 허가를 받고 1998년 8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 실시방안에서는 우전개혁의 방침에 의해 우편과 통신의 분리경영의 의의, 지도원칙, 분리경영 요점, 자산·부채와 소유권 구분 및 기업의 내부기구 설치수량, 명칭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그 실시방안은 우편과 통신의 분리경영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i) 우편과 통신의 분리경영은 우편, 통신기업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요구 적용과 현대 기업제도의 구축에 유의해야 한다.
- ii) 우편과 통신의 분리경영은 우편망, 통신망 및 그 운영시스템의 통일성과 완전성에 유의하고 국가 통신과 정보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iii) 우편과 통신의 분리경영은 우편, 통신사업의 장기 발전에 유의하고 우편, 통신서비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iv) 우편과 통신의 분리경영은 우편 통신 2대 분야의 지속적인 단결에 유의하고, 분리후 각급 우정관리국은 모두 기업운영의 수요, 고효율의 원칙에 따라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경영체제 전환은 기존의 관리업무를 기업운영의 궤도로 전환해야 한다.

5. 중국전신의 주식제도 도입의 검토

거시적으로 볼 때 중국 국가경제체제의 개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시장경제 환경도 점점

개선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법률, 법규도 정비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개선은 공평한 경쟁시장경제 환경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에게 상응한 경영기법의 도입을 요구한다.

중국 공산당의 1997년 9월 15차 당대표대회에서 주식제도는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유제(公有制)의 실현형식이다. 주식제도는 현대화 실현의 일종의 자본조달 형식이며,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에 유리하고, 기업과 자본의 운영 효율에 유리하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현대 기업제도를 구축하려면 “按照「產權清暫，權責分明，政企分開，管理科學」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국유의 중대형(中大型) 기업에서는 규범적인 기업(企司制) 개혁을 실시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의 체제에 적응하는 경쟁주체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기본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현대 기업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기업은 그 업종의 특징 때문에 기업개혁 면에서 약간 뒤떨어져 왔다. 그러나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주식제도로의 변화하고, 자본시장운영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China Telecom의 개혁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앞서 살펴본 1998년 3월의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진행되고 있는 우편과 전기통신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개혁은 China Telecom의 체제 개혁에 조건을 지워 주었으며, China Telecom도 정치와 기업의 분리를 이룩하여 완전히 독립 시장경제의 실체와 경쟁의 단위로 될 것이다. 또한 China Telecom과 각 省 통신기업들간의 관계도 점차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China Telecom이 전략적인 개혁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현대 기업제도를 구축하고, “자본”을 매개로 하는 신축적이고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기제의 구축에도 유리하여, China Telecom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기업은 반드시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기업기법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동시에 세계 통신시장의 개방이 날로 다가오고, 세계 통신경쟁도 날로 자유롭고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국경과 업종을 초월하여 교차 경영하고 있으며, M&A도 일반적인 추세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China Telecom이 하루속히 시장경제와 국제경쟁에 적응하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기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China Telecom은 이미 주식제도로의 개혁에서 효과적인 탐색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자본시장의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China Telecom 회사는 성공적으로 재산의 재구성과 주식 상장을 하였고, 현재 전국 무선호출 업종도 재산의 재구성 체제를

개혁하여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통신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우편과 전기통신을 분리하여 경영하는 것도 개혁의 첫 단계이다. 현재 정부와 기업의 관계, 우편과 전기통신의 관계, 그리고 China Telecom과 그 산하 기업들간의 업무지도 감독관계(행정, 예속관계와 업무지도관계)를 정립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들간의 업무, 자금과 재산의 관계의 정립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 China Telecom은 여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경영방식으로서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미래 발전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China Telecom은 2단계의 개혁에 직면하고 있는데, 즉 내부의 산업재구성,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산업 재구성의 선택대안에는 주로 2가지 방법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것은 지역화경영과 전업화(專業化)경영이다.¹⁰⁾

그리고 현재의 개혁 시점에서 볼 때, 무선통신사업은 중국 전역에 있는 기업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제도를 개혁하여 주식상장을 하고 있는데, 광동이동통신공사와 절강이동통신공사로 재조직화된 中國電信(홍콩)회사는 이미 세계시장에 상장하였고, 홍콩에서 주식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China Telecom의 제2단계 개혁은 가능하면 전업화경영을 위주로 하는 산업 재구성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준다.

II. 정보통신관련 입법 동향

중국에 있어서 정보산업은 이미 핵심산업과 새로운 경제성장 요인으로 되었지만 이에 관

10) 먼저 지역화경영은 각 省 지역 내에서 당해 지역 통신회사(전신공사)를 설립하여, 그 지역내의 공중통신망과 각종 정보통신업무의 경영을 책임지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합리적인 국면을 형성하여, 결산(決算)의 복잡성을 형성할 수 있어, 공중통신망의 통일성과 전체 네트워크의 연합작업에 불리하다. 그 다음으로 전업화경영은 China Telecom 산하에 전업 통신회사(專業通信會社)를 설립하여,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와 업무의 경영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보증하는 전제하에서 업무들간의 정산을 나누는데 유리하며, 미래의 시장경쟁과 네트워크 경영에 대응하는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업화경영을 기술상의 통일에 유리하며, 체계성이 증가되고, “전체 네트워크(全網)” 현상을 만들 수 있으며, 규모화 경영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전업화경영은 사회로부터의 자금조달, 투자 주체의 단일 국면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전업(專業) 통신의 자금조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전업화경영은 만일 주식회사와 결합하지 못한다면 예상했던 효과에 도달하지 못한다.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우편과 전기통신이 분리 경영된 후, China Telecom은 국내 경쟁의 요구와 國有企業 개혁의 추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인 재조정을 진행할 것인데, 주식제도는 그것의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련된 법률과 법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중국 공중멀티미디어 통신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1997년 12월부터 발효하였다.¹¹⁾

새로이 설립된 정보산업부는 입법의 조직 책임을 질 것이 기대된다. 중국에서 시급히 제정하여야 할 몇 가지 법률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¹²⁾

1. 통신법(電信法)

시급히 제정해야 할 몇 가지 법률 중의 하나로서 첫째로 꼽히는 것이 통신법(電信法)이다. 통신법은 중국의 물리적 정보전송망(원래의 통신망, CATV망 및 전용망을 포함)을 규범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ITA와 WTO에 가입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통신시장(부가서비스와 기본통신을 포함)을 개방하는 것이다. 만일 법적 규제 여건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개방된 시장은 무질서한 경쟁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제 경쟁의 진입은 정보화 기반구조 구축과 중국 국내 기업의 발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법의 입법은 발등의 불이다.

Unicom 설립은 이론상 기본통신의 독점을 해체했지만 기본통신의 경쟁은 아직도 약한 상태다. 기본통신의 사실적 독점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통신비용, 서비스 태도 및 불공평한 부가서비스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전체적 이익, 장기적 이익의 각도에서 통신법을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 1997년 관련 부문에서 12년만에 통신법(電信法)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중국의 통신기업은 그 성질과 경영범위에 의해 국가공중통신기업(國家公用電信企業), 기타 공중통신기업(其他公用電信企業)과 부가통신기업(增值電信企業)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른 설립과 외자도입에 대한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¹³⁾

11) 정신량·오병운, 『중국의 전기통신 자유화와 우리의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pp.136~139 참조.

12) 다음은 楊學山 국무원 정보공작관공실 정책법규조조장, 국가 정보센터총경제사와의 대답을 기초로 작성하였다(『計算機世界報』, 1998. 5. 1, pp.65~66 참조).

13) 이하는 中華人民共和國電信法(草案) 제3장 電信企業 중 일부분만을 간추려 본다. 차후에 중국 통신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18조 정보통신 기업은 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업법인 자격을 가진, 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경제조직이다. 통신기업은 그 성질과 경영범위에 의해 국가공중통신기업(國家公用電信企業), 기타 공중통신기업(其他公用電信企業)과 부가통신기업(增值電信企業)으로 나뉜다.

제19조 국가공중통신기업은 국가공중통신 기간망을 건설하고 보호하고 경영하며 전국에 여러 가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편적인 서비스 의무와 국가의 특수한 통신, 긴급한 통신 업

2. 통신망과 정보 안전 관련 법률·법규

통신망안전과 정보안전은 모두 중요하기도 하지만 주체간의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정보와 망은 정보사회가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초시설이며 국가의 안전과 회사(개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새로운 통신망 대안이 나타나고 인터넷 등의 새로운 서비스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정보안전과 망안전 부문의 법규 제정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3. 정보자원 부문의 법률·법규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한 전략자원이다. 정보의 생산, 수집, 전송, 사용 전과정에 상응한 규범을 제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규범적이지 못한 일들이 법률의 단속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제3차 工業調查의 주요 성과는 공업조사의 숫자이다. 만약 정보가 일종의 자원이라면 이렇게 몇 십억원을 투자한 통계숫자는 아주 귀중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술한 양학산 조장에 의하면 실제 어떤 회사라도 몇 십만원을 투자하면 그 숫자를 전부 살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래가 합법적인지 중국의 국가

무를 책임지는 공중통신기업이다. 국가에서 수요에 의해 설치한 각급 통신국(電信局)(郵電局)은 국가공중통신기업의 운영기구이다. 국가공중통신기업 및 그 운영기구는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법에 따라 공상주책등기(工商注冊登記)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가특수통신”과 “긴급통신”의 범위 및 요구는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0조 국가공중통신기업은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가격으로 전국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최저한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편적인 서비스업무 종류, 품질요구 및 원가보상방법은 국무원의 통신 주관부문에 규정한다.

제21조 국가공중통신기업은 국가공중통신망에 가입을 요구하는 기타 공중통신기업, 부가서비스 통신기업과 전용통신 단위에 공평한 가입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입(接入)방식과 결산비용은 서로 연결하는 쌍방(互聯雙方)이 국무원 통신주관부문의 규정된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쌍방은 90일 내에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통신 주관부문에 제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22조 기타 공중통신기업이란 스스로 일부분의 기초통신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국가의 공중통신망과 서로 연결 되어 있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공중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기업이다. 기타공중통신기업을 구축하려면 응당 국가국무원 통신 주관부문에 심사하고 뒤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다음에 법에 따라 공상주책등기를 해야 한다.

제23조 부가통신기업은 공중통신기업의 기초통신망을 이용하여 대용한 통신 혹은 데이터 처리 설비를 배치하여 부가가치(附加價值)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혹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기업이다. 부가통신기업을 구축하려면 먼저 국무원통신주관부문 혹은 지방통신관리기구(통신주관부문이라고 약함)에서 심사·비준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다음에 법에 따라 공상주책등기를 제공한다.

이익에 부합되는지 공평하고 합리적인지는 아직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도 검토되고 있다.

4. 고도서비스 관련 법률·법규

전자상거래, 의료, 원격교육 등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법률·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정보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은 많은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의 디지털 서명 문제, 거래의 문제발생의 확인 및 책임부담문제, 원격의료사과의 확인, 국민의 네트워크교육 향유권의 조건제정 등이다. 원래의 법률·법규가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정은 신규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그것이 규범화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새로운 운영방식이 전통적인 운영 방식을 대체한 후에도 여전히 원래의 법률이 규범하지 못하였던 문제가 존재하기에 법률·법규와 표준제도를 제정하여 규범화하여야 한다. 법률·법규, 표준제도가 부단히 정비되는 과정은 곧 네트워크 응용이 발전하는 과정이다.

중국에서 정보 입법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관계를 중시하고 문서화를 기피하는 국민 습성이외에도, 현재 중국내의 네트워크의 응용이 아직 초기단계여서 상응한 법률·법규를 내놓는 것이 성숙되지 못하였다.

Ⅲ. 정보통신산업의 미래와 개혁 전망

1.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미래

1998년 7월 말 시점에서 중국의 전화가입지는 1억회선을 돌파하였고, 8월에는 이동전화가 입자도 2,000만회선을 돌파하였다. 전자가 전년대비 약 16.7%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후자는 약 10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998년과 2000년대의 중국 우전통신의 발전목표는 다음과 같다.

China Telecom이 현재 큰 성과를 거두긴 하였지만 정보통신 서비스업무의 사용정도와 보급 정도는 아직 매우 낮아서 중국의 통신시장의 잠재력은 아직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화보급률이나 이동전화보급률이 일반적인 포화치와는 아직도 매우 큰 거리가 있으며, 데이터 통신, 그리고 멀티미디어 업무도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어 통신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광대한 정보통신 시장은 정보통신운영 기업에 거대한 발전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경쟁환경 하에서 China Telecom이 비교적 큰 시장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한편으로 투자개발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확한 운영체계를

갖추어 시장에서의 운용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표 1〉 중국 우전통신의 장단기 발전목표

1998년 중국통신 발전목표	2000년 사업계획	2010년 장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투자: 1,200億元 완성 ○ 우전서비스총액: 2,280億元 ○ 우전서비스매출액: 2,305億元 ○ 신규 증설 교환용량: 1,700만회선 ○ 신규 증설 이동전화체널: 60만 ○ 신규 전화가입자수: 2,000만가구 확보, 그중, 이동전화: 800만 ○ 전국전화보급률: 9.7%, 그 중 도시 30% ○ 데이터통신, 멀티미디어통신 신규 가입자: 40만 확보 ○ 신규 무선호출가입자: 80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투자규모: 6,329億元 ○ 우전업무총량: 3,422億元 ○ 서비스매출액: 3,372億元 ○ 광케이블 20만km ○ M /W 14만km ○ 40개 대형 위성지구국 ○ 국설전화교환기총용량: 1.66억회선 ○ 이동통신채널수: 229만 ○ 이동전화교환기총용량: 5,577만 가입자 용량 ○ 전화가입자: 1.5억, 보급률 13%, 도시 40%, 그 중 이동전화가입자는 3,800만, 보급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매출액: 11,000億元 ○ 업무총량: 14,000億元 ○ 전화교환기총용량: 3.7억회선 ○ 전화가입자: 4.9억, 보급률 38%, 그 중 고정전화 2.9억, 보급률 23%, 이동전화 2억, 보급률 15% ○ 우편물총량: 342억건

현재 중국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문은 무선호출업무와 이동통신 업무이다. 1997년 말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그러나 가장 큰 시장인 유선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7월부터 China Telecom이 Unicom에게 Tianjin에서 접속서비스를 허용한 정도에 불과하나 이것도 경쟁을 통해 통신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려는 정책 당국의 최근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유선서비스에 대한 경쟁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혜택을 입는 것은 물론 통신업체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 2〉 China Telecom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점유율(1997년말 기준)

구 분	주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그외 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	China Telecom: 97.4%	Unicom: 2.6%
무선호출서비스	China Telecom: 67.68%	32.32%

중국에서도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의 결합과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건설에 의해, 미래의 데이터통신과 각종 데이터서비스의 발전이 유망할 것이고, 따라서 경쟁도 매우 격렬하게

될 것이다. 1994년 이래 새로운 업무의 발전이 매우 빠르는데 특히 인터넷업무의 발전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1997년의 이용자의 증가율이 370% 이상에 달하는 정도였다. 현재 중국 내에는 4대망 운영회사와 100여개 정보제공업자들은 컴퓨터 인터넷의 데이터서비스 시장을 개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은 점차 심해지고, 경쟁환경도 정비되는 과정에 있다. China Telecom은 현재 시장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고, 절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여 비교적 큰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기업 운영 메카니즘에서 볼 때, China Telecom은 전통적인 독점체제에서 전환한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 국가 경제체제 개혁과 미래 국제경쟁의 수요에 적응하려면 역시 전략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자체 분석되고 있다.

2. 정보통신산업의 개혁 전망

정보통신산업을 관장할 새로운 정보산업부의 부장으로는 우전부 부장이 임명되었다. 따라서 기존 우전부의 정책기조 하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짐으로써 급격한 정보통신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산업부는 전자공업부가 상당 부분 역할을 담당했던 정보화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라디오·CATV·방송부가 관리했던 CATV 망의 활용도 중요한 정보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정보통신산업은 기존 우전부를 주축으로 보다 보수적으로 China Telecom을 재편하고 새로운 통신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입장과 전반적인 국유기업의 개혁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하는 입장이 서로 절충하면서 재편될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행정과 기업의 분리, 우편과 통신의 분리, 주식제로의 기업체제의 전환 등 중요한 조치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으며 개혁역량과 파급범위는 전에 없었던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획기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분명히 미래 지향적인 명확한 선택이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내적으로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국유기업에 대한 엄격한 개혁의 요구, 그리고 외적으로 정보기술환경 및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중국의 정보통신산업은 개혁의 필요성은 자명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정보통신의 연구개발 경쟁과 인수합병의 붐은 중국의 정보통신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다.

현재 중국 통신기업의 체제는 이런 경쟁에 적응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므로 가장 시급

한 것은 기업경영체제를 개혁하고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화 또는 주식화 개조를 통해 일련의 응집력이 강한 대기업체, 대기업집단을 설립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China Telecom의 일부 이동전화서비스가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이는 China Telecom 체제전환의 하나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다. China Telecom은 금년에도 이동통신분야의 주식상장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국적 무선호출집단공사를 설립하여 일부 고품질 자산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 정부 주도로 국제경쟁에 대응하는 정책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WTO 가입협상에서 시장개방 일정을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통신법에서도 시장개방의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산업부가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서 개혁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시장이 보다 적극적인 경쟁환경에 처하기까지는 현재 중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시점보다 오히려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내의 정부조직의 개편으로부터 시작된 국유기업의 개혁은 중국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명백한 경기후퇴, 외환시장의 불안정, 막대한 홍수피해 등으로 인하여 대량의 실업을 수반하는 국유기업의 개혁은 위험과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서순복·권해수의, 『중국의 이동통신 연구개발 현황 및 진출전략』, 한성대학교, 1997. 3.
-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각호.
- [3] 통신개발연구원, 『WTO 기본통신협상 종합보고서』, 1997. 6.
- [4] 정신량, 「중국의 전기통신 자유화 동향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9. 2.
- [5] 정신량·오병운, 『중국의 전기통신 자유화와 우리의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 [6] 『中國情報新聞』, 1998年 8期, pp.96~97.
- [7] 『計算機世界報』, 1998. 5. 1, pp.65~66.
- [8] 國家經濟貿易委員會, 「“9.5”國家重點新技術推廣項目指南」, 『中外科技政策與管理』, 中國科技院文獻情報中心, 1997. 3.

- [9] *China Securities Bulletin*, 1998. 6. 5.
- [10] *Financial Times*, 1998. 5. 25.
- [11] Jake Lynch, *Comparing the Investment Potential Between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Industry Sectors in China*, 1997. 5. (Seminar Proceedings)
- [12] John Ure, *Clarifying The Current Status of and Future Developments of Telecom Regulations*, 1997. 5. (Seminar Proceedings)
- [13] *Newsnet Asia*, 1998. 6. 16.
- [14]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Superhighways and Telecommunications in Asia*, 1997. 8.